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0 - 23호

시행일자 2020. 2. 5.

수 신 부산교통공사 사장

참 조

선 결			지	
접	일자		시	
수	시간		결	
번	번호		재	
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2020년 부산교통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PQ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공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제2020-1017호)」 및 「부산광역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2016-460호)」에 따라 귀 공사가 공고한 「2020년 부산교통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선처를 바랍니다.

(1) 붙 임 : 의견서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의견서

□ 현황

구분	국토부 고시기준	귀 공사 PQ 세부평가기준(안)	비고
근거 기준 및 현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28조제1항 2호에 따른 국토부 고시「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2) II,3, 다항의 경우 - 해당 전문 분야는 정밀안전진단에 있어 과업의 특성에 따라 ①교량 및 터널 ②수리시설 ③항만 ④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2조 별표1의 시설물의 범위 (5.건축물)에는 동종 시설물로서 중요도 등에 따라 1종, 2종 시설물로 구분	○ 2020년 부산교통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PQ기준(안) 5.항목별 세부기준 나, 다항의 경우 -해당 전문 분야 (예비 공고상의 기준) ※ 교량및터널, 철도역사건축물로 하였고 ※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 및 기타 건축물로 구분 하였음. ○ PQ 참가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과 실적 적용에 있어 건축분야를 해당 전문분야(철도, 역사건축물)와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 (기타 건축분야)로 이원화 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전문분야(철도, 역사건축물)는 경력과 실적을 100% 적용하고 해당전문분야외의 분야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동종, 동급의 유사시설물에 대한 경력과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평가항목 해당 배점을 60% 밖에 받을 수 없어 이는 이중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됨.	

□ 문 제 점

1. 귀 공사의 PQ 기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시설물의 범위 (5.건축물)를 벗어난(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음.

2. 또한, 귀 공사 PQ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국토부 고시 PQ기준의 해당전문분야는 건축분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해당전문분야(철도, 역사건축물)와 해당전문분야외(기타 건축물)로 분리하여 철도역사 건축물을 진단하지 않은 책임기술자나, 비슷한 동급의 건축물의 진단 경력과 실적을 가진 책임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

3. 상기 1, 2항은 국토부 고시 2019-168호 (2019.04.2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③항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며,

4. 국토부 PQ 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1.8항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됨.

5.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철도역사 건축물은 「시설물안전법」상 1,2종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건축물로서 철도역사 건축물과 동급의 건축물이 많이 있음에도 건축분야를 타 분야(예,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분야)인 것처럼 전문분야(철도역사 건축물)와 전문분야외(기타건축물)로 구분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6. 또한 어느 발주처이든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귀 공사와 같이 발주한 예가 없음.

7. 따라서 귀 공사의 PQ 기준(안)은 객관성이 결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적정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음.

□ 검토의견

귀 공사의 PQ 기준(안)은 특별법인 「시설물안전법」과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협회 회원들의 집단적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PQ 기준(해당전문분야를 전문분야와 전문분야외의 분야로 구분 하지 말고 건축분야로 수정하고, 또한 평가항목 배점의 60% 적용은 삭제)으로 조정하여 참여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끝.